

##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 
번 호

30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7.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### 1. 제안이유

행정여건 변화 및 관련법규 개정등으로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,  
사망한 자가 포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포상의 종류중 “질서상”은 현실에 맞지않아 “표창장”에 포함하여 시상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(안 제4조).
- 나.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대리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(안 제14조의2).
- 다. “별지4호서식”의 『자랑스런 구민상』 선정기준중 산업근로부문 추가 (안 제7조).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상훈법 제33조, 정부표창규정 제18조
- 나. 부산광역시포상조례 제4조 및 제14조

##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4조중 “질서상”을 삭제한다

제6조를 삭제한다

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4조의2(포상의 추서)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

“별지4호서식”을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 자”

(별지 제4호서식)

##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

서상부문	선정기준
효행선행상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개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불우이웃을 위해 다년간 헌신 봉사하고 재산을 사회에 희사하신 분</li> <li>○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면서 비영리법인을 다년간 운영해 오신 분</li> <li>○ 의로운 일을 해내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분</li> <li>○ 노부모 봉양 및 불치병 간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한 분</li> <li>○ 기타 효행과 선행에 있어 타 주민의 귀감이 되는 구민</li> </ul>
교육문화상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교육문화 발전과 건전한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후세 교육과 선진교육 추구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함으로써,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분</li> <li>○ 내고장 전통문화 발굴, 계승 등 향토의 명예를 빛내는데 기여한 분</li> <li>○ 기타 교육문화를 통하여 사회정의와 도의양양에 기여한 분</li> <li>○ 기타 타의 귀감이 되는 분</li> </ul>
산업근로상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근로자 또는 경영자로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사 화합에 이바지 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분</li> <li>○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분</li> <li>○ 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사 및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분</li> <li>○ 해외투자 및 수출에 힘써 외화획득에 공이 많은 분</li> <li>○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힘써 기업발전을 이룬 모범 경영자</li> <li>○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</li> </ul>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<u>표창장, 자랑스런구민상, 질서상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</u>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, 자랑스런구민상은 <u>효행선행상, 교육문화상, 산업근로상</u>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.</p> <p>다만,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</p> <p><u>제6조(질서상)</u> ①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</li> <li>2. 골중도덕 준수</li> <li>3.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</li> <li>4.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화</li> <li>5. 기타 도시질서 확립</li> </ol> <p>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<u>포상방법</u>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포상의종류) . . . . .</p> <p>표창장, 자랑스런구민상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 . . . . .</p> <p>. . . . .</p> <p>(삭 제)</p>
<p>제14조(포상시기) ①~③(생략)</p> <p>④ 제6조에 의한 질서상은 연4회 매분기 의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, 장려상 2명으로 한다</p> <p>(신설)</p>	<p>제14조(포상시기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 제)</p> <p>제14조의2 (포상의 추서)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는 그 유족에게 추서 할 수 있다.</p>

(별지4호서식)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	개 정 안
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		
시 상 구 분	선 정 기 준	시 상 구 분
효 행 선행상	(생 악)	효 행 선행상
교 육 문화상	(생 악)	교 육 문화상
(신설)	(신 설)	<p><u>노사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근로자 또는 경영자로서</u></p> <p>○ 노사 화합에 이바지 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분</p> <p>○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으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분</p> <p>○ 투철한 사명감으로 회사 및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분</p> <p>○ 해외투자 및 수출에 힘써 외화 획득에 공이 많은 분</p> <p>○ 기업가 정신에 입각하여 기술개발과 투자 에 적극힘써 기업발전을 이룬 모범경영자</p> <p>○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구민</p>